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8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엄태영 · 김재섭 · 이인선
강명구 · 정동만 · 서천호
김상훈 · 윤한홍 · 송언석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분의 3”을 “10분의 7”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4분의 3”을 “10분의 7”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③ (생략)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u>4분의 3</u> 이상 및 토지면적의 <u>3분의 2</u>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 ⑩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10분의 7</u>----- -----<u>2분의 1</u>----- ----- ----- ----- -----. ⑤ ~ ⑩ (현행과 같음)
--	--